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소방대상물 및 대중교통차량 등에
방연마스크 설치의무 부과〉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7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03.
3. 회 부 일 : 2024. 12.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

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II. 검토의견

1. 특정소방대상물 및 대중교통차량에 방연마스크 설치의무 부과

개정안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2조제1항 등).

현행	임오경의원안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생략) <신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防煙)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1)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제12조제1항).

한편, 누구든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를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제55조),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제61조제1항제1호).

개정안들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여, 개정안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법 제55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 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2.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③ ----- 제1항 및 제2항에-----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④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제1항 및 제2항에-----

-----.

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 ③ (생략)

⑤ -----제4항-----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6항에-----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
-----전단 또는 제2항에-----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생략)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2. ~ 6. (생략)

② (생략)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

④ -----

----제12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도-----
-----.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

-----.

1. 제12조제3항에-----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u>제12조제3항</u>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생략) ② ~ ④ (생략) 제56조(벌칙) ① <u>제12조제3항</u>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12조제2항</u>,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 9. (생략)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12조제1항</u>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2. ~ 15. (생략) ② (생략)	----- 2. <u>제12조제4항</u>을-----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u>제12조제4항</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 ----- ----- ----- -----. 1. <u>제12조제3항</u>----- ----- ----- ----- ----- 2. ~ 9. (현행과 같음) 제61조(과태료) ① ----- ----- ----- -----. 1. <u>제12조제1항</u> 또는 <u>제2항</u>을----- ----- ----- 2.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제2조제1항제3호2)), 현행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을 공동주택,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30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3)〉

① 공동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④ 종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u>운수시설</u> ⑦ 의료시설
⑧ 교육연구시설	⑨ 노유자시설	⑩ 수련시설 ⑪ 운동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⑫ 업무시설 ⑬ 숙박시설 ⑭ 위락시설
- ⑮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⑯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⑱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⑲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⑳ 자원순환 관련 시설
- ㉑ 교정 및 군사시설 ㉒ 방송통신시설 ㉓ 발전시설
- ㉔ 묘지 관련 시설 ㉕ 관광휴게시설
- ㉖ 장례시설(「의료법」 제36조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시설은 제외)
- ㉗ 지하가(지하상가/터널)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
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㉘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인 것
- ㉙ 국가유산
- ㉚ 복합건축물

(자료: 소방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⁴⁾의 관계인⁵⁾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⁶⁾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현행법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등은 운수시설로 분류되어⁷⁾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므로 [별표 4]에 따라 그 관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함.

참고로 개정안 제12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차량은 소방 관계 법률에 따른 소방대상물⁸⁾이기는 하나 이 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는 아니함⁹⁾.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감지하여 알리고, 물 또는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며, 피난 및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을 말함.

구체적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¹⁰⁾.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8)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9)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법 제2조제1항제3호), 버스, 기차 등 '동산'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종류 (법 제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영 제3조, 별표1)	화재 안전 기준 (고시)
소화 설비	정의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 모래 외 2종
경보 설비	정의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외1)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차. 화재알림설비	
피난 구조 설비	정의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 완강기 외 8종
소화 용수	정의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소화 활동 설비	정의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자료: 소방청)

소방시설과 관련한 현행법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시설을 5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법 제2조제1항제1호), 시행령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영 제3조 및 [별표 1]).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주택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제10조제1항), 차량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제11조¹¹⁾),

이는 주택과 자동차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체계 상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해서 의무 규정을 부과한 것으로 이해됨.

도시철도차량¹²⁾, 철도차량¹³⁾, 여객자동차¹⁴⁾의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차량과 철도차량은 「철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재 감지장치 등을 비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있음.

12)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여객자동차에 설치하는 소방용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소방용품	근거 법령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안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	화재감지장치	「철도차량 기술기준」 8. 화재감지장치(p4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안 제12조제2항제2호 나목)	화재감지 및 경보방송장치, 경보장치, 비상등, 소화기	「일반철도차량(객차) 기술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안 제12조제2항제2호 다목)	비상탈출장치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자동차규칙」 제30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료: 소방청)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예시)>

소 방 시 설		적 용 기 준
소 화 설 비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인 것
	옥내소화전 설비	- 연면적 1,500㎡ 이상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 옥상 차고 또는 주차장용도 200㎡ 이상인 것은 해당 부분
	스프링클러 설비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부속된 보일러실·연결통로 포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이 500명이상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해당 층
	물분무등 소화설비	- 내부 차고·주차장(필로티 포함) 용도 사용면적 200㎡ 이상

	옥외소화전 설비	- 지상1층~2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 *연소우려 이격거리 1층 6m·2층 10m
경 보 설 비	비상경보 설비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것 모든 층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각경보기 (`04.5.30)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비상방송 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 -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모든 층
	가스누설 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
피 난 구 조 설 비	피난기구	- 지상3층 ~ 지상10층까지 설치(피난층 제외)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적용
	비상조명등	- 지하층 포함 5개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해당 층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소 화 활 동 설 비	제연설비	-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 - 특별피난계단(지하3층 이상 또는 지상11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높이 31m 초과)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지상 30층 이상)
	연결송수관 설비	- 5층 이상이고 연면적 6,000㎡ 이상 모든 층 / - 지하층 포함 7개층 이상 모든 층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모든 층
	연결살수 설비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 - 지하층(주출구가 도로와 접한 피난층은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은 지하 모든 층
	비상콘센트 설비	- 층수가 11층 이상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 - 30층 이상은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 지하층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지하 모든 층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규정하고, ① 특정소방대상물, ② 도시철도차량, ③ 철도차량, ④ 여객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방연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숙박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4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32명이 사망하고 355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20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숙박시설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명)	부상(명)	
계	1,843	32	355	20,816
2019	365	10	113	3,302
2020	344	10	53	2,946
2021	375	7	55	4,549
2022	382	2	78	4,049
2023	377	3	56	5,970

(자료: 소방청)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약 3,28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6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4,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버스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75억 4,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명)	부상(명)	
계	11	0	0	32.8
2019	2	0	0	27.0
2020	2	0	0	1.4
2021	3	0	0	0.4
2022	2	0	0	0.1
2023	2	0	0	3.9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 철도차량*에서의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명)	부상(명)	
계	15	0	6	48.2
2019	1	0	0	8.9
2020	1	0	2	1.8
2021	1	0	0	0.2
2022	7	0	4	13.5
2023	5	0	0	23.8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화재통계에 대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는 별도의 구분 코드가 없으며, 철도차량(기관차, 전동차 등) 화재로 통합관리 되고 있음.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 버스*에서의 화재 발생 현황>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사망(명)	부상(명)	
계	564	1	5	7,545
2019	110	1	0	1,448
2020	108	0	2	1,402
2021	100	0	0	1,519
2022	106	0	3	1,282
2023	140	0	0	1,89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여객 자동차 화재통계에 대하여 국가 화재정보시스템에서는 별도의 구분 코드가 없으며, 여객 자동차 중 버스 화재만 통합 관리되고 있음.

(자료: 소방청)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화재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이에 따른 화상을 원인으로 한 인명피해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3~5배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연기의 속성 상 화재 발생 시 연기 속에 포함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함.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인명피해* 통계>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2,074	2,515	2,283	2,130	2,669	2,477
화상	5,009	1,065	922	902	1,065	1,055
연기,유독가스흡입	3,719	785	673	640	843	778
연기,유독가스흡입및화상	1,361	257	320	237	293	254
기타	632	150	126	108	133	115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348	55	61	58	92	82
열상	327	74	52	56	76	69
미상	257	53	49	57	56	42
피난중뛰어내림	182	39	33	30	37	43
복합원인	180	30	34	29	53	34
건물붕괴	45	7	8	11	16	3
간헐	14	0	5	2	5	2

* 인명피해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소방청)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모든 특정소방시설물과 도시철도 차량·철도 차량·여객버스 등의 관계인에게 의무적으로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이들 시설 또는 대중 교통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의 설치·비치와 관련한 관련 법률의 체계를 고려하고 현재 소방청이 추진 중인 화재 예방 정책과 방연마스크의 특징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의 설치·비치와 관련한 현행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및 [별표 4]에서 각각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여객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행 법령의 체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가연성 건축자재의 특징과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화재 예방 정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가연성 건축자재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되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2022년 12월부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300㎡(약90평)이상인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15) 화재 예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셋째, 방연마스크의 경우, 방연마스크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241조의2제2항16))에 따라 사업장에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감시자

15) 소방청은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음(‘22.12.1.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¹⁷⁾」를 제정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소방청은 새로운 소방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 규모 등을 정하고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며, 해당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편의성, 성능 등의 검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5. 28.>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5. 28.>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17) (예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는 존재하지 않고¹⁸⁾,

방연마스크는 시야 확보에 제한되고 착용·사용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착용시간이 1분 정도 소요되며 방연마스크가 밀착되지 않을 경우 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등 오히려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방연마스크 등 간이호흡기구는 소모성 재난안전제품¹⁹⁾에 해당되기에 현행법에서 획일적인 설치기준으로 의무 규제하기보다는 설치장소, 이용자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

18) 소방청은 현재 민간 자율인증으로 유통되는 방연마스크는 2종인데, 이 중 ① 한국표준협회에서 품목 지정한 KSM6766(표준번호) 여과식 간이호흡기구는 산업용 방연마스크로 포스겐 등 화재시 배출되는 다양한 유독가스에 사용이 곤란하고 산소가 17vol% 이하인 환경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② 자급식 간이호흡기구는 화재시 모든 유독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시간이 이동 대피시에는 15분(25ℓ/min 호흡기준), 구조 대기시에는 30분(10ℓ/min 호흡기준)으로 짧은 단점이 있다고 설명함.

* 상세 내용은 [참고 1] 참조

19)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재난안전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2.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3.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②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2.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설 위주로 조례 등을 통한 보급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힘.

또한, 소방청은 개정안과 같이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짧은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영업주 등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참고로, 정부는 2008년 경기 용인 고시원 화재사고²⁰⁾를 계기로 총리실 및 관계 부처 회의('08.8.5)를 거쳐 방연마스크를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2009년 규제심사 시 방연마스크가 모든 연소 가스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²¹⁾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방연마스크의 착용 편의성, 기밀성, 내열성 등 성능을 보강한 후 다중이용업소에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고, 관계인에게 KS 제품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는 방안을 채택한 적이 있음²²⁾.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입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0) '08.7.25.에 발생한 용인 고시원 화재사고로 사망7명, 부상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

21)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Cl), 시안화수소(HCN), 이산화황(SO₂), 프로페닐, 사이클로헥세인(C₂H₁₂) 등 6종의 가스만 정화 가능

22) 2008년 당시의 간이호흡기구 도입 추진 경과는 [참고 2] 참조

-철도차량은 「철도차량 기술기준」(3.2.4항)에 따라 차체 및 실내설비 등을 불·난연소재로 사용하여 화재 안전성능 규격에 맞게 설계·제작 하도록 하고 있고, 출입문을 포함한 비상탈출구(비상창문 등)와 비상망치, 비상하차설비 등의 설치 의무가 있으며, 화재시 승객안내를 위한 방송장치 설치, 이외 안전에 필요한 조치(화재감지·경보장치 및 소화기 설치, 공기조화·환기장치를 이용한 연기제어 등)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차량 화재 시 체계적·실효성있는 대피 시나리오를 운용 중임.

-도시철도 차량의 경우, 지하역사 승강장에 이미 화재대피용 마스크 설치·관리 중이고, 지하철도차량 내에는 탑승인원이 사용할 방연마스크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 하므로 현재와 같이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 즉시 대피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여객버스는 이미 비상문 등 대피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경우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 탈출을 위한 비상탈출장치²³⁾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2020년 7월 이전 생산 차량 등 비상구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 유리를 깨 수 있는 망치(4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²⁴⁾, 시외버스의 경우

23) 승강구, 비상문, 비상탈출구 등을 의미함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하도록 방송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임²⁵⁾. 특히, 버스는 주로 지상을 운행하여 창문 등으로 탈출이 용이한 편인데 시내버스는 승강구 및 개폐식 창문을 이용해서 탈출이 가능하고 시외버스는 비상탈출장치 또는 비상 망치를 이용하여 승객이 탈출 가능하며 최근 10년간 노선버스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51

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별표5의31]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참고 1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호흡기구의 종류

(자료: 소방청)

구분	자급식 간이호흡기구	여과식(방연마스크) 간이호흡기구
		
제품 기준	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소방산업기술원) ²⁶⁾	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국가기술표준원)
종류	(K타입) 호흡기구 내부의 KO_2 에 의하여 발생한 산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기구 (P타입) 압력용기로부터 산소 또는 공기를 공급하여 호흡하는 기구	정화통을 탈착, 6종류*의 가스를 정화 (산소농도 17% 이하에서 사용 금지) * 일산화탄소(CO), 염화수소(Hd), 시안화 수소(HCN), 이산화황(SO_2), 프로페닐, 사이클로헥세인(C_2H_{12})
가격 등	(K타입) 2개업체[(주)선양테크, (주)한컴라이트케어]에서 KFI 인정받음 (100,000원) (P타입) KFI 인정제품 없음 / 제품 미생산	시도조례에 따라 지하철 역사 등에 임의 설치 (31,000원 ~ 55,000원)
사용 시간	-이동 대피시 15분(25ℓ/min 호흡기준) -구조 대기시 30분(10ℓ/min 호흡기준)	15분 이상
장단 점	- 화재시 모든 유독가스에 사용 가능 - 유효기간 5년(1회 재사용 가능)	-포스겐 등 화재시 배출되는 다양한 유독가스에 사용 곤란(6종만 정화) -유효기간 5년(재사용불가)

26) 소방산업기술원 자체 인정(KFI 인정)은 화재의 예방, 구조, 구급 등에 사용되는 제품 중에 소방법령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인증 및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품을 제외한 소방 관련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의 입증 절차를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해 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규정에 따라 품질 및 성능을 인정하는 제도임.

참고 2 간이호흡기구 도입 여부 검토 결과(2008년)

(자료: 소방청)

□ 추진경과

- (2008) 경기 용인 고시원 화재사고('08.7.25.-사망 7, 부상 3)를 계기로 총리실 및 BH 관계부처 회의('08.8.5)를 거쳐 다중이용업소에 도입 결정
-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 입법예고*
 - * (기간) '08.12.11. ~ 12.30. / (내용) 구획된 실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한 간이호흡기구 비치
- (비교실험) 자급식(KFI)과 여과식(KS) 비교실험을 통한 문제점 파악('09.2.19)
 - ↳ 실험결과 착용의 편의성, 기밀성, 내열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성능보완 필요
- (연구용역)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09.12.)
 - ↳ 성능보완을 전제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자급식 간이호흡기구(KFI)를, 기타 장소에는 여과식(KS)을 단계적으로 권장 비치 제언
- (도입중단) 2009년 규제심사 시 착용 편의성, 기밀성, 내열성 등 성능보강 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계인이 KS 제품 등을 자율 설치토록 권고

□ 간이호흡기구 도입 관련 검토 결과

- (용의정의) 피난설비는 화재시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器具) 또는 설비(設備)이나 간이호흡기구는 단순 대피용 마스크로서 재난안전제품(안전용품)에 해당
- (사용용도)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는 관계인이 사용하는 기구이나 간이호흡기구는 이용자가 사용
- (설치위치) 완강기, 구조대 등 피난설비는 건축물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이나 간이호흡기구는 소모품(비치물품)에 해당
- ➡ (검토결과) 간이호흡기구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로서 소방시설법 상 피난구조설비라기 보다는 소모성 안전용품에 해당되기에 소방시설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자율 설치토록 권장하는 것이 타당